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37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전종덕 · 정춘생 · 김준형
송재봉 · 손 술 · 윤종오
최혁진 · 이수진 · 임미애
진성준 · 정혜경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 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국방·통

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

조 등).

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마.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사.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9장의2 신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投票人名簿에”를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로 한다.

제7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の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の 長”이라 한다)은”을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區·市·邑·面の 長에게”를 “구·시·군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邑·面の 長은”을 “구·시·군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區・市・邑・面の 長은”을 “구・시・군의 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區・市・邑・面の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邑・面の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區・市・邑・面的 長은”을 “구・시・군의 장은”으로, “邑・面에”를 “군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的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한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이를 할 수 없

다.

제49조 중 “18日”을 “30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제1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區·市·邑·面”을 “구·시·군”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郵便投票”를 “우편투표 및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제5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말한다)”로 한다.

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97조제5항 중 “投票人名簿”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로 한다.

제104조 중 “投票人名簿作成”을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으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운동한계규정위반죄)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投票人の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u>投票人名簿에</u> 登 載된 者를 말한다.	第2條(投票人の 定義) ----- ----- -----투표인명부 또 는 <u>재외투표인명부에</u> ----- -----.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第7條(投票權) 18세----- -----: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國 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u>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u> <u>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u> <u>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u> <u>다) ·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u> <u>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u> <u>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u> <u>域에 한한다) · 邑長 · 面長(이하</u> <u>“區 · 市 · 邑 · 面の 長”이라 한</u> <u>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 현재</u> <u>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u> <u>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u> <u>「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u> <u>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u> <u>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u>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 ----- -- <u>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u> <u>한다)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u> <u>한 시를 말한다) · 군(이하 “구</u> <u>· 시 · 군”이라 한다)의 장은--</u> ----- ----- ----- ----- ----- ----- ----- ----- ----- -----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91 조의3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 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投票區
別로 調査하여 國民投票日公告
日로부터 5日 이내에 投票人名
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國內
居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로서 國民投票日 현
재에 스스로 投票所에서 投票
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民投票日
公告日로부터 5日 이내에 區 ·
市 · 邑 · 面의 長에게 不在者申
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
은 無料로 한다.

1. ~ 3. (생략)

③ 區 · 市 · 邑 · 面의 長은 第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에는 投票人名簿에 이를 표
시하는 동시에 不在者申告人名
簿를 投票區別로 따로 작성하
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區 · 市 · 邑 · 面의 長은 投
票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
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

한다)를 -----

② -----

-----구 ·

시 · 군의 장에게-----

1. ~ 3. (현행과 같음)

③ 구 · 시 · 군의 장은-----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구 · 시 · 군의 장은-----

本 1通을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第15條(名簿作成의 監督) ① (생
략)

② 區・市・邑・面의 長과 投
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
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
市・邑・面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에 통보하여야 한다. 區・市・
邑・面의 長이 事故로 인하여
다른 者가 그 職務를 代理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投票人名簿의 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人
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任
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 또는 特別市・廣域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이하
“市・道選舉管理委員會”라 한
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 區・市・邑・面의 長과 投
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
員이 정당한 이유없이 投票人

-----.

⑧ (현행과 같음)

第15條(名簿作成의 監督) ① (현
행과 같음)

② 구・시・군의 장-----

-----구・
시・군의 장-----

-----구・시・
군의 장-----
-----.

③ -----
구・시・군의 장-----

-----.

④ 구・시・군의 장-----

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不應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替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第16條(名簿閱覽) ① 區·市·邑·面의 長은 投票人名簿作成滿了日의 다음 날로부터 3日間場所를 정하여 投票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하며, 投票權者의 편의를 위하여 閱覽期間中 區·市에 있어서는 統別, 邑·面에 있어서는 里別의 投票人名簿謄本을 統·里의 長이 지정하는 場所에 비치하여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17條(異議申請) ① 投票權者는 누구든지 投票人名簿에 漏落·誤記 또는 資格이 없는 投票人이 登載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illegible]

⑤ (현행과 같음)

第16條(名簿閱覽) ① 구·시·군
의 장은

군
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7條(異議申請) ① -----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여 그 修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區·市·邑·面의 長이 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日 이내에 審査·決定하되 異議가 정당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投票人名簿를 修正하고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18條(異議決定에 대한 不服申請) ① (생략)

②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第1項의 再審要求를 받은 때에는 2日 이내에 審査·決定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管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投票人名簿를 修正하게 하고 즉시 申請人과 관계인에

구·시·군의 장

② 구·시·군의 장

第18條(異議決定에 대한 不服申請)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시·군의 장

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관계
인과 關係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20條(投票人名簿의 再作成) ①
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
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
邑·面의 長은 다시 投票人名
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 投票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投票人名簿를 다시 작
성하지 아니하고 그 投票人名
簿謄本에 의한다.

② (생략)

第21條(名簿寫本의 교부) ① 區·
市·邑·面의 長은 國民投票日
公告日 현재 國會에 交渉團體
를 구성한 政黨(이하 “政黨”이
라 한다)의 申請이 있는 때에
는 확정된 投票人名簿 또는 不
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1通을
그 名簿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시·군의
장-----
-----.

第20條(投票人名簿의 再作成) ①

-----구·시·
군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第21條(名簿寫本의 교부) ① 구·
시·군의 장-----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人名簿寫本 및 不在者申告人名簿寫本の 交付申請은 投票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確定日前일까지 당해 <u>區·市·邑·面의 長</u>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u>第26條(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의 期間)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로부터 投票日 前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u> <u>第27條(運動의 한계) 運動은 이 法에 規定된 이외의 방법으로 는 이를 할 수 없다.</u> 第49條(國民投票日의 公告) 大統領은 늦어도 國民投票日전 <u>18</u> 日까지 國民投票日과 國民投票案을 동시에 公告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 ----- ----- ----- -----<u>구·시·군의 장</u>-----.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27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한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u> 第49條(國民投票日의 公告) ----- -----<u>30</u> 日-----. <u>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u>
---	---

第56條(投票通知票交付) ① 區·

市·邑·面의 長은 投票通知票
를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投票
人(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同居人의 順으
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
에게 投票日전 2日까지 교부하
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區·市·邑·面의 長과 投
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通
知票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의 區域안에 居
住하는 投票權者중에서 政黨이

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
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
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
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
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
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56條(投票通知票交付) ① 구·

시·군의 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시·군의 장-----

구·시·군-----

指名하는 者(이하 “投票通知票
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人
씩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 없
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第75條(開票開始) ① · ② (생략)

③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는 郵便投票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郵便投票用 投票函
에 投入·보관하여야 하며, 投
票日 下午 6時부터 開票參觀人
의 참여하에 本人이 發送한 여
부를 확인하고 外封套를 開封
하여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같이 混合하여 開票한다.

<신 설>

<신 설>

-----.

-----.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75條(開票開始)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우편투표 및 우편으로 송부
된 사전투표(제5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
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등기우
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말
한다)-----

-----.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
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
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

는 判決에 명시가 없는 한 第1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投票에 사용된 <u>投票人名簿</u>를 사용한다.	----- -----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
⑥ ~ ⑧ (생략) 第104條(職權濫用에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罪) 國民投票에 관하여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警察公務員 기타의 關係公務員이나 <u>投票人名簿作成</u>에 關係있는 者가 故意로 投票人名簿의 閱覽을 방해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하거나 投票通知票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職權을 濫用하여 投票의 自由를 방해하는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第104條(職權濫用에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罪) ----- -----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작성----- ----- ----- ----- -----.
第118條(事前運動罪등)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動을 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18조(운동한계규정위반죄) 제27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